

## ● '99년도 원자력연구개발 성과확산사업 안내

과학기술부는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 국내연구개발주체들이 보유한 각종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신제품개발 및 신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제품개발지원사업, 첨단기술사업화센터(HTC)입주기업지원사업, 신기술창업지원사업 등 3가지 유형의 『연구개발성과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년 3회에 걸쳐 신청·평가·지원 예정으로 7월 22일을 마지막으로 2회모집이 마감되며 마지막 3회『연구개발성과확산사업』은 신청 : '99.7.23부터 10.9까지, 평가 : 10.10부터 11.10 까지, 최종 11.11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99 연구개발성과확산사업의 기본방향은 [1] 기술제공자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술사용자 위주 사업추진방식을 개편하고, [2] 연구 중심 계획에서 개발 중심 위주로 [3] 각 참여주체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장치 마련하는 등 국가연구결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사업추진방식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기술사용자 위주의 사업 지원은 그간 연구원 등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이전비용지원에서 탈피하여 신기술을 토대로 한 제품개발·창업 등의 기술활용비용을 기술사용자에게 직접 지원하여 기술사용자 위주로 세부 사업 재구성하며 종전에는 기술제공자가 개발결과를 사용자에게 Push하는 “실용화연구지원” “기술이전지원사업” “연구원창업지원사업”을 신제품개발지원사업, 신기술사업화센터(HTC)입주기업 지원사업, 신기술 창업지원사업의 3가지 직접사업으로 하며 신기술사업단의 “창업종합지원사업”을 변경하여 기술사용자가 필요기술을 제공자로부터 Pull하는 “신제품개발지원”으로 세부사업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개발계획 중심의 평가 및 지원은 연구결과의 실용화·사업화를 보다 촉진하기위해 연구 중심의 계획보다는 개발 중심의 계획에 대해 평가·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평가 대상 에 있어서 연구원 등 기술의 제공자가 작성한 연구중심의 계획이었으나 기업 등 기술의 사용자가 작성한 개발 중심의 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원 범위도 종전에는 기술이전비용 (추가연구·기술자문 등 )에서 기술활용비용 (제품개발·창업 등)으로 바뀌었으며 지원 대상도 연구원 등 기술제공자에서 기업, 창업자 등 기술사용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능동 참여 및 실수요자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참여 주체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주체들간 기술료 계약 체결 의무화(성공시 모든 주체들에 果實분배) 하였으며 실수요자 참여도모를 위해 적정 비용 수익자 분담을 원칙화 하였습니다.

또한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이전받아 제품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자체보유기술을 제품화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외)으로서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8조의 3항의 기관
- 그 외에도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인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확보한 기관
- 동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기관 및 개인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ttp://www.kistep.re.kr/> 전화 : 02)-589-2282-6